

##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전문위원 입 석 규 입니다. 2002.6.17(월)

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條例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거
- 충청북도과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.

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
-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제1조에
-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부 등이 제2조와 제3조에
- 동 심의회 기능이 제4조에
- 끝으로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었으며
- 동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동년 5월 31일 심의하여 제2조의 심의회 구성인원과 임기를 일부 수정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□ 다음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. 1. 목적(“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”)을 명시하지 않아 그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며

○ 먼저, 동 조례(안)의 제1조를 보면 상위법인 과학교육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(“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”)을 명시하지 않아 그 취지가 명확하지 못하며

○ 동 조례(안) 제2조 제1항의 구성인원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, 제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의결한 사유 및 그 적정성의 여부

○ 동 조례(안) 제5조에서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를 규정하지 않은 점, 그리고 심의회의 위원장이 의장으로 표현된 점

○ 동 조례(안) 제6조에서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

○ 동 조례(안) 제2조 일부 조문상의 용어가 명료하지 못한 점  
- 제3항 제2호의 ..... 인정하는 人士 (⇒ 者)  
- 제4항의 ..... 임기는 당해 職 (⇒ 職位)

○ 동 조례(안) 제7조는 수당과 여비를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과 제2호에 의한 외부 위촉인사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단서규정은 “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어, 향후 회계관계자 및 관계 담당자가 수당·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.

-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각 조항별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상으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(안)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

본 보고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(안) 검토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,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의 발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.

본 보고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(안) 검토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,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의 발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.

본 보고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(안) 검토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,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의 발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.

본 보고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(안) 검토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, 충청북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의 발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(안)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취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---- <u>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</u> -----
제2조(구성)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<u>15인 이내</u> 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.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1. 과학교육 진흥업무와 관련되는 본청의 과장급 이상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 2.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그러나 다만,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,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<u>달래전에</u>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2조(구성)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<u>9인 이상 15인 이내</u> 로 구성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 . . . ) 1. ( . . . ) 2. ----- 인정하는 <u>자</u>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----- ----- 위원의 임기는 <u>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</u> 으로 한다.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①위원장의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① (현행과 같음) ② ( . . . )
제4조(기능)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과학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여하는 사항 3. 그밖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제4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( . . . ) 2. ( . . . ) 3. ( . . . )
제5조(회의)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<u>그 의장이 된다.</u>  < 신 설 > ②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5조(회의)①----- <u>그 회의를 주재한다.</u> ②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(현행과 같음)
제6조(간사)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②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인 중에서 <u>위원장이 임명</u> 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	제6조(간사)①(현행과 같음) ②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<u>과학교육담당장학관</u> 이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제7조(수당과 여비)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 < 신 설 >	제7조(수당과 여비) (현행과 같음)  <u>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·학예에관한계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.</u>